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370

발의연월일: 2025. 3. 26.

발 의 자:진종오·서천호·박충권

정성국 · 박정하 · 김재섭

백종헌 • 곽규택 • 최보윤

서명옥 · 김미애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세계 4대 스포츠 메가 이벤트(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FIFA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모두 개최한 세계 10대 스포츠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스포츠 선진국이 이미 1970~80년대에 국립스포츠박물관을 개관하여 스포츠 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 스포츠 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스포츠사에 가치있는 유물의 소실과 훼손이 우려되는 실정이므로 국가 차원에서 스포츠 유산을 발굴・보존・연구하는 기관의 설립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 유산의 수집·보존·전시와 이의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국립스포츠박물관을 설립·운영할 수있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에 국립스포츠박물관의 스포츠 유산의 보존·관리 사업을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세계적인 스포츠 강국

인 우리나라의 스포츠 유산을 체계적으로 유지·발전시키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및 제22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3조의3(국립스포츠박물관의 설립과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스포츠 유산의 수집·보존·전시와 이의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국립스포츠박물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국립스포츠박물관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제1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0의2. 제13조의3에 따른 국립스포츠박물관의 스포츠 유산의 보존 관리를 위한 사업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u>	제13조의3(국립스포츠박물관의
	설립과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스포츠 유산의 수집·보존·전
	시와 이의 체계적인 조사・연
	구를 위하여 국립스포츠박물관
	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립스포츠박
	물관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 국민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
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	
용하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	
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	
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u> <신 설></u>	10의2. 제13조의3에 따른 국립
	스포츠박물관의 스포츠 유산
	의 보존·관리를 위한 사업
11.・12. (생 략)	11.・1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